2020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0년 9월 10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지원 위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홍 경 식 금융결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지난 6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II.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3. 시장안정화 대책' 중 일부 소제목을 정책수단의 도입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변경하기로 하였음. 또한 민간소비 등 실물경제 상황과 주가, 외국인 채권투자 등 금융지표의 변동 요인을최근의 움직임까지 포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결정 배경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9월 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최근의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과거 위기 시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8월 말 이후의 장기시장금리 동향을 추가하고, 최근 국제금 융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신용지표에 대한 서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확대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참고 I-3.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에서 최근 미 연준이 발표한 통화정책 장기목표 및 전략 성명서의 개정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통화정책의 실물경제로의 파급경로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 III-1.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요인 점검'과 관련하여 서비스업 생산과 서비스 소비 간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여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당행이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 중 하나로 현재의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 경제주체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였음. 따라서 앞으로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에 대한 독자들 의 반응이나 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생략)

<의안 제41호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개정(안)>

<의안 제42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

<의안 제43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하여 결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하여 동 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한국은행법」제28조, 제 54조, 제81조 등에 의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규정들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들에 대해 8월 12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도입의 주요 효과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중 복잡한 결제 알고리즘 (algorithm)으로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방식을 폐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단축하여 결제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결제전용 예금계좌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동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를 해소하였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점검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가동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의 기본 취지와 동 제도의 개선시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하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참가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정책 전반을 재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에 이어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참가제도 변경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불이익으로 작용 하거나 금융기관의 참가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영국 핀테크(Fintech) 업체의 파산에 따른 지급결제 시스템 퇴출 사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해상황에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 성 증대 등으로 한은금융망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하 면서, 변경된 제도의 시행 전까지 참가기관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한은금융망 참가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개정(안)(생략)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개정(안)(생략)